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2. 9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명 변경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	장정희 의원 외 9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명
변경에 따른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등 일괄개정조례안”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장정희 의원 외 9명
- 제안일 : 2022. 11. 22.
- 회부일 : 2022. 11. 25. (의안번호 : 22-147)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(2022. 7. 7. 공포·시행)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(대상조례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등 4개 (변경내용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
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5. 절차이행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함.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(2022. 7. 7. 공포·시행)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4건의 조례에서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정비하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